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1998년 11월 24일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1998년 1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 12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정호문)

가. 개정 사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함

나. 주요 골자

- 별정직 정년 연장규정 삭제
- 휴직관련 조항보완(휴직기간, 휴지효력 명기)
- 정년단축에 따른 부칙조항 보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재천)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임용조건등 필요한 사항 등에 의거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3항 및 4항을 삭제하고
- 제10조의 직권면직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 제11조의 휴직은 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정조례안임.

4. 관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및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 이상”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 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및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 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④(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 ·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 ·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4.(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p>④ <삭 제></p> <p>제10조(직권면직).....</p> <p>1.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p> <p>2.~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p> <p>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